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7월 13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7월 13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3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7월 21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이 2021. 12. 14. 개정, 2022. 4. 1.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 출생한 다자녀 가정 중심으로 구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‘새로 태어난 영아’를 지칭하는 용어를 “출생아동”으로 통일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(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별지 서식)

○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기준 및 신청서류를 명확하게 정비함 (안 제5조, 안 제6조)

○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결과 첫째아와 둘째

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50만원으로 변경함 (안 제6호제1항)

○ 제8조 “다른 법령과의 관계”, 제9조 “시행규칙” 조문을 삭제함 (안 제8조, 안 제9조)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관련 내용 명시 등 출산축하금 신청 서식을 정비함 (안 별지 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(2021. 12. 14. 개정, 2022. 4. 1. 시행) 2022년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우리 구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법률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으로 개정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·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2) 주요내용

○ ‘새로 태어난 영아’를 지칭하는 용어를 “출생아동”으로 통일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(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별지 서식)

○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기준 및 신청서류를 명확하게 정비함 (안 제5조, 안 제6조)

○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결과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50만원으로 변경함 (안 제6호제1항)

< 첫만남 이용권 개요 >

○ **(목적)**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
○ **(지원대상)** 출생신고된 영유아 (출생후 28일 이내 사망한 신생아 제외*)

- '22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

○ **(신청권자)**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
○ **(신청기간)** 출생신고 이후부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

○ **(지원금액·사용처)** 200만원/출생아당, 유흥업소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

-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, 지나친 제한 지양

○ **(지원절차)** 신청접수일로부터 '30일' 이내(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) 지급 결정 및 바우처 생성

- 출생신고시(방문·온라인) 신청, 바우처 지급일(결정 통지)로부터 1년까지 사용

○ **(전달체계)** (읍면동) 신청.접수→ (시군구) 지원결정 → (사회보장정보원) 바우처 생성.관리→ (읍면동/시군구) 대상자 관리

○ 제8조 "다른 법령과의 관계", 제9조 "시행규칙" 조문을 삭제함 (안 제8조, 안 제9조)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관련 내용 명시 등 출산축하금 신청 서식을 정비함 (안 별지 서식)

다. 검토의견

❍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(2020.12.) 발표한 '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' (2021～2025)[1]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첫만남 꾸러미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며, 이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이 개정됨(2021. 12. 14. 개정, 2022. 4. 1. 시행)

❍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 양육 지원의 내용 중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첫만남 이용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

1) 제1차 기본계획: 2006년～2010년, 제2차 기본계획: 2011년～2015년, 제3차 기본계획: 2016년～2020년
제4차 기본계획: 2021년～2025년

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핵심 정책 >

1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·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,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

- (영아수당 신설) '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,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.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('22년 도입, '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)
- **(첫만남 꾸러미)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(60→100만원), 아동 출생시 바우처(일시금) 200만원 신규 도입, 총300만원을 의료비·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**

2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'19년 10.5만명에서 '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

- (3+3 육아휴직제)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(통상임금 100%) 지원
- (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)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원(현행 50%, 최대 120만원)
- (중소기업 지원 확대)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
- (보편적 육아휴직 권리) 고용보험 가입 특고, 예술인,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

3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, 서비스 내실화

- '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%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('22년 53만명까지 확대)

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·교육지원 확대

-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('21~'25.)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
-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('22년~)

5 고령자가 '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'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

- (소득)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21. 15만 가구 신규지원), 노인 일자리 확충(~'21. 80만개)
- (돌봄)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('25),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(통합재가급여, 단기보호·돌봄 확대)
- (주거)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(~'25. 2만호), 고령자보호구역 확대(25. 3,000개소 이상) 등

6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'삶의 주체'로 인식, 신중년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

- (노후소득)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, 퇴직연금 활성화
- (고용)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(경력설계-훈련-취업지원 패키지)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(월40~80만원), 양질의 일자리 확충(사회서비스, 시니어인턴십 확충)
- (건강)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(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),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

* 자료 : 보건복지부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수정안 요지(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소관)

가. 수정이유 : 셋째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을 원안대로(70만원) 지급하기로 수정함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